

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: 수익증권저축약관
2. 시행일 : 2023 년 2 월 15 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변경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제 22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전에 게시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<u>불리한 것일 때에는</u>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</p>	<p>제 22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<u>변경내용(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</u>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전에 게시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<u>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</u>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</p>	<p>약관 변경 시 공시·통지의무 확대(금감원 요청)</p>

<p>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~⑤ <생략></p>	<p>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~⑤ <좌동></p>	
<p><신설></p>	<p><부칙> 7. 개정규정은 2023 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</p>	